긴급 입찰 사유서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과천관 야외조각작품 보존처리 용역

나. 사업금액 : 금100,000,000원

다. 사업기간 : 계약 체결 후 ~ ‘26.12.18.까지

2. 긴급입찰 사유 및 근거법령

가.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5조 제4항
1. 제20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 입찰의 경우
1의 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나. 긴급입찰 사유

ㅇ 본 사업은 대형 야외조각작품의 보존처리 사업으로 관람객의 안전사고 예방, 기상환경적인 영향, 야외 조각작품의 전시, 안정적인 보존관리 등을 고려할 때 최소 10월부터 과업의 착수가 필요함.

ㅇ 또한 해당 용역 사업이 속한 [미술품수장보존센터 운영(3331-317)]은 26년 기획예산처 신속집행 관리대상 사업으로서 조기 집행 관리를 받는 사업임

* 근거 조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위 용역 사업의 긴급입찰을 요청함